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873
보존기간	10년
결재일자	2020.02.03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13호

★차장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상임감사			

제535회 임시이사회 부의안 2020사업연도 예산 수정부의(안) 등 2건

2020. 1

부 의 안

제535회 이 사 회			
일 자	2020. 2. 17	의안번호	제 호
의 제	2020사업연도 예산 수정부의(안)		
구 분	의 결 사 항		

- 제 안 자 : 기획조정실장
- 주 문 : 2020사업연도 예산 수정부의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안사유 : 제534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2020사업연도 예산(안)을 서울특별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하기 위함
-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- 참고사항
 1. 관련근거
 - 지방공기업법 제65조(예산) 및 제76조(설립·운영)
 -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(사업계획 및 예산)
 -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24조(의결사항)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(기능)
 -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예산(안) 처리('19.12.16)
 2.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

2020사업연도 예산 수정부의(안)

□ 예산규모 변경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최종예산(B)	증 감 액(B-A)
예 산 액	4,091	4,087	△4

□ 수정사유 : 제290회 시의회 예산(안) 처리결과 반영

- 2020사업연도 예산(안) 부의('19.12.23) 및 제534회 이사회 개최('19.12.27) 확정 이후 市 주무부서로부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변동된 사항 통보('19.12.30)

(단위 : 억원)

회 계 명	기정예산(A)	수정예산(B)	증 감 액(B-A)	변 경 내 용
총 계	4,091	4,087	△4	총 2개 회계 예산규모 변동
전 용 도 로	125	120	△5	·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(수선유지비 감 △5억)
공공자전거	327	328	1	· 따릉이 사회적 가치 평가 연구용역 (연구용역비 증 1억)
기타 27개 회계	3,639	3,639	-	(변동사항 없음)

□ 예산(안) 주요 수정내용

- 가. 지출예산규모 수정 : 4억원 감액 ※사업별 市 세입목표 변경사항 없음
(단위 : 억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수정예산(B)	증 감 액(B-A)	변 경 내 용
총 계	4,091	4,087	△4	
인 건 비	1,734	1,734	-	
경 비	1,913	1,909	△4	· 자동차 전용도로 감액(△5억) · 공공자전거 증액(1억)
자 본 예 산	397	397	-	
예 비 비 등	47	47	-	

나. 예산규모 변동에 따른 「예산총칙」 수정

○ 추정손익계산서(제1조 가항)

당초의결(안)				수정의결(안)			
가. 추정손익계산서 (단위:백만원)				가. 추정손익계산서 (단위:백만원)			
차 변		대 변		차 변		대 변	
비 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	비 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
358,319	-	358,319	-	357,930	-	357,930	-

※ 2020년도 사업예산 369,001백만원(총예산408,671백만원에서 자본예산 39,670백만원 제외) 중 전년도 평균 반납률 3% 반영

○ 추정현금흐름표(제1조 다항)

당초의결(안)		수정의결(안)	
다. 추정현금흐름표 (단위:백만원)		다. 추정현금흐름표 (단위:백만원)	
과 목	금 액	과 목	금 액
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18,595	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18,195
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△11,502	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△11,102
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-	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-
IV. 현금의 증감(Ⅰ+Ⅱ+Ⅲ)	7,093	IV. 현금의 증감(Ⅰ+Ⅱ+Ⅲ)	7,093
V. 기초의 현금	78,789	V. 기초의 현금	78,789
VI. 기말의 현금	85,882	VI. 기말의 현금	85,882

※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대행사업자금 수령 및 지출금액,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건물·건축물 등 취득에 따른 자금 유출액,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임대보증금 증가분 등

○ 일시차입금 한도(제8조 ①항)

당초의결(안)	수정의결(안)
제8조(일시차입금) 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대행사업 예산 총액의 1분기 상당액 102,267백만원으로 한다.	제8조(일시차입금) ① ————— < 생략 >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1분기 상당액 102,167백만원으로 한다.

※ 일시차입 한도액의 설정규모 변경(총 예산의 25%)

부 의 안

제535회 이 사 회			
일 자	2020. 2. 17	의안번호	제 호
의 제	2019사업연도 예비비 사용(안)		
구 분	의 결 사 항		

- 제 안 자 : 기획조정실장
- 주 문 : 2019사업연도 예비비 사용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- 제안사유 : 중요시책인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으로 발생한 퇴직급여 부족분 보전을 위해 예비비 집행잔액 사용을 하기 위함
-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- 참고사항
 1. 관련근거
 - 지방공기업법 제65조(예산) 및 제76조(설립·운영)
 -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(사업계획 및 예산)
 -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24조(의결사항)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(기능)
 - 서울시설공단 예산총칙 제14조(예비비 사용)
 2.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

2019사업연도 예비비 사용(안)

□ **관련근거 : 市 택시물류과-2928호(2020.01.21.)**

【장애인콜택시 예비비 잔액 사용 요청에 대한 회신】

《검토의견 : 사용 승인》

- 퇴직금의 경우, 기존 운전원 전체 평균임금의 10%를 예산 편성(18억)하여 적립 해왔으며, 2019년도에 발생한 퇴직급여 부족액(30억)은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임금 체계 개선으로 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상승에서 비롯되었음.
- 따라서, 2019년도 예비비 집행잔액(218백만원)을 반납처리하는 것보다 일부분이라도 퇴직금 부족액 충당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□ **사용내용 : 퇴직급여 보전을 위한 기편성 예비비 집행잔액 사용**

○ **장애인콜택시 회계 예비비 편성 및 기사용내역**
(제531회 이사회 의결사항 2019.8.19.)

(단위 : 백만원)

편성액 (A)	사용액 (B)	잔 액 (B-A)	사용 사유
1,890	1,672	218	· 증차(63대)에 따른 인력증원 예비비 사용 (772백만원) · '19년도 생활임금 충족을 위한 예비비 사용 (900백만원)

○ **'19년 장애인콜택시 회계 퇴직급여 부족예상액**

(단위 : 백만원)

편성액 (A)	추가소요 (B)	과부족 (B-A)	추가소요 발생사유
1,805	4,820	△3,015	·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으로 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당해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필요액 증가

【市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서울시 추경예산 지원 시 결정사항】

《이사회 소위원회 운영('19.4.1. / 4.5.)》

- 구 성 : (사외이사) 염성철, 류영득, 한성남 (공익위원) 노사정모델협의회 정종오 변호사
(공 단) 기획조정실장, 인사처장 (서울시) 공기업담당관, 노동정책담당관
- 결 정 : 추가소요 인건비 37억 중 서울시 부담은 26억원으로 조정
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대비한 운전원 인력증원 예비비 9억원 사용
※ 기타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료는 경비 절감 등으로 회계별 충당(노력)

□ 예산변경 : 예비비 218백만원 사용 (예산규모 변동 없음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기정예산 (A)	수정예산 (B)	증 감 액 (B-A)	비 고
총 계	45,879	45,879	-	(변동사항 없음)
인 건 비	20,648	20,866	218	· 퇴직급여 218백만원 증
경 비	19,871	19,871	-	(변동사항 없음)
자 본 예 산	5,142	5,142	-	(변동사항 없음)
예 비 비	218	-	△218	· 기편성 인력증원 예비비 집행잔액 사용